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05
----------	-----

2023. 8. 29.  
운영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8. 18. 김진경 의원 등 14명

나. 상정의결

-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2023. 8. 29.)  
“수정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대표발의자 김진경 의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나. 교섭단체의 정의 (안 제2조)
- 다. 교섭단체의 기능과 구성(안 제3조, 안 제4조)
- 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직무(안 제5조)
- 마. 교섭단체의 등록 및 소속 의원의 변경사항 보고 (안 제6조, 안 제7조)
- 바. 교섭단체 예산 등의 지원 (안 제8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 해당 없음

##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구경남)

○ 2023. 9. 22.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제3항<sup>1)</sup>의 규정에 따라 정당 또는 단체의 교섭단체를 구성 및 운영하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 국회의 경우 교섭단체는 구성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동일정당 소속 의원 20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원내정치단체를 말하고 국회 의사결정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소속 의원들의 원내 행동통일을 통해 정당이 추구하는 바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으나 지나치게 기속력을 강화할 경우 개별의원들의 자유로운 원내활동에 제약이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구성목적은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 또는 원내단체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조정하여 정파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있음. 새로이 임기가

### 1) 지방자치법

제63조의2(교섭단체)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1.]

[시행일: 2023. 9. 22.] 제63조의2

시작되는 국회에서는 종전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효력이 상실함  
으로 새로운 교섭단체 구성을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 **교섭단체 대표의원**이란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그 정당의 대표와는 구별되며 소속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교섭단체 구성시의 규약 등에 의하여 선출되나 통상 **원내대표를 정당별 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선출된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맡고 있음. 각 교섭단체는 교섭단체 구성시에 소속의원의 명부와 함께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변경시에도 선임 대표의원이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의장이 대표의원과의 협의할 사항은 의석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요청, 인사 청문위원회 설치에 대한 협의, 상임위원회 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개선 요청 등 많은 권한이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명시되어 있음.
- 한편, 서울특별시의회를 비롯한 일부 광역의회에서는 조례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나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아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받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었음.
- 그러나 행정안전부훈령인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개정된 내용으로 2024년도 예산편성부터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음.

현 행	개 정
<p><b>[별표1] 지방의회 관련 경비</b></p> <p>②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p> <p>1. 의정운영공통경비</p> <p>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p>	<p><b>[별표1] 지방의회 관련 경비</b></p> <p>②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p> <p>1. 의정운영공통경비</p> <p>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p>

현 행		개 정															
<p>②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을 편성 - &lt;신 설&gt;</p> <p>※ &lt;신 설&gt;</p>		<p>공통적인 경비</p> <p>②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을 편성 - 예외 :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전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 총액의 최대 10% 추가 편성 가능 (다음연도 총액한도 산정 시에는 한도초과 증액분은 제외 후 산정) ※ 추가 편성은 조례에 직접 지원근거를 둔 경우에 한하며, 교섭단체 수 및 교섭단체 내 의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편성</p>															
<p><b>[별표1] 지방의회 관련 경비</b></p> <p>②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p> <p>2. 의회운영업무추진비</p> <p>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p> <p>②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을 편성</p> <p>※ 단, 의회운영의장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 제3항의 지역협의체의 회장 단체인 경우 최근 3년간 의장업무추진비 평균 예산액의 30%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p> <p>※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하여는 상임위원장 예산편성액을 적용 계상 가능</p> <p>※ &lt;신 설&gt;</p>		<p><b>[별표1] 지방의회 관련 경비</b></p> <p>②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p> <p>2. 의회운영업무추진비</p> <p>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p> <p>②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을 편성</p> <p>※ &lt;현행과 같음&gt;</p> <p>※ &lt;현행과 같음&gt;</p> <p>※ 교섭단체 대표의원에 대하여는 교섭단체 수 및 교섭단체 내 의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계상 가능</p>															
<p><b>[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b>205 의회비</b></td> <td>1.~3. (생략) &lt; 신 설 &gt; 4. 예산편성 : 관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금액</td> </tr> <tr> <td></td> <td><b>05. 의정운영공통경비</b></td> </tr> <tr> <td></td> <td>1.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를</td> </tr> </table>		<b>205 의회비</b>	1.~3. (생략) < 신 설 > 4. 예산편성 : 관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금액		<b>05. 의정운영공통경비</b>		1.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를	<p><b>[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b>205 의회비</b></td> <td>1.~3. (생략) &lt; 신 설 &gt; 4. 지방자치단체별 교섭단체의 의회 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은 조례에 직접 지원근거를 둔 경우에 한하며, 교섭단체 수 및 교섭단체 내 의원 수 등을 고려하여 계상하여야 함</td> </tr> <tr> <td></td> <td>5. 예산편성 : 관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금액</td> </tr> <tr> <td></td> <td><b>05. 의정운영공통경비</b></td> </tr> <tr> <td></td> <td>1. 의회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명의를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td> </tr> </table>		<b>205 의회비</b>	1.~3. (생략) < 신 설 > 4. 지방자치단체별 교섭단체의 의회 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은 조례에 직접 지원근거를 둔 경우에 한하며, 교섭단체 수 및 교섭단체 내 의원 수 등을 고려하여 계상하여야 함		5. 예산편성 : 관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금액		<b>05. 의정운영공통경비</b>		1. 의회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명의를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b>205 의회비</b>	1.~3. (생략) < 신 설 > 4. 예산편성 : 관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금액																
	<b>05. 의정운영공통경비</b>																
	1.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를																
<b>205 의회비</b>	1.~3. (생략) < 신 설 > 4. 지방자치단체별 교섭단체의 의회 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은 조례에 직접 지원근거를 둔 경우에 한하며, 교섭단체 수 및 교섭단체 내 의원 수 등을 고려하여 계상하여야 함																
	5. 예산편성 : 관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금액																
	<b>05. 의정운영공통경비</b>																
	1. 의회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명의를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현 행		개 정	
	<p>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p> <p>2. (생략)</p> <p>3.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u>전문분야별 연구활동 지원경비</u> &lt;신설&gt;</p> <p>4. (생략)</p>		<p>소요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p> <p>2. (생략)</p> <p>3.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경비</p> <p>4. <u>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의회운영 공동경비는 조례에 직접 지원 근거를 둔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 가능</u></p> <p>5. (생략)</p>
	<p><b>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b></p> <p>1. <u>지방의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u> 지방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p> <p>2. (생략)</p> <p>3. &lt;신설&gt;</p>		<p><b>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b></p> <p>1. <u>지방의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의원</u>의 지방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p> <p>2. (생략)</p> <p>3. <u>교섭단체 대표의원</u>에 대한 활동비는 <u>교섭단체 대표로서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조례에 직접 지원근거를 둔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 가능</u></p>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교섭단체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 하겠음.

○ 서울특별시의회 및 자치구의회 등 7개 의회에서는 조례 또는 규칙으로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해 오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법제화가 된 만큼 조례 제정이 필요해 보임.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에서는 “교섭단체” 라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보임. 「국회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도 “교섭단체” 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법령용어를 위임조례에서 직접 용어정의하는 것은 조례로 법령의 해석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입법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위임조례의 성격상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보여짐.
- **안 제3조(기능)** 교섭단체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으나 기능의 범위가 추상적·포괄적 규정으로 보여져 해석·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법」을 모두 준용하여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나 첨부된 <참고 자료>를 살펴 보시기 바람.
- **안 제4조(구성)**의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하여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과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 구성을 각각 5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적정한 것인지 논의를 통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교섭단체가 구성된 다른 자치구<sup>2)</sup>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는 있다고 하겠음.
- **안 제5조(대표의원의 직무 등)제1항**에서는 대표의원이 교섭단체

2) 서울 자치구 교섭단체 구성 인원

서울 자치구의의회	의원정수	교섭단체 구성 인원
광진구의의회	14	3인 이상
중구의의회	9	3인 이상
양천구의의회	18	3인 이상
성북구의의회	22	3인 이상
서대문구의의회	15	3인 이상
강동구의의회	18	3인 이상
노원구의의회	21	5인 이상

의견을 통합·조정하는 점에서는 이해되나 제2항 중 “의회운영과 관련된 사항” 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협의사항은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의회운영위원회와의 관계 또는 대표의원의 권한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향후 의회 운영상 원활하지 못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짐. 첨부된 국회의 사례 <참고 자료>를 살펴 보시기 바람.

- 안 제6조(교섭단체의 등록 등)에서는 교섭단체의 등록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기한이 없어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음. 참고로 <사례><sup>3)</sup>와 같이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임.
- 안 제7조(소속의원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에서는 교섭단체 탈퇴, 신규가입, 소속정당의 변경시 대표의원이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소속의원 대표의원이 보고하는 것인지, 신규가입하는 소속 대표의원이 보고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바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안 제8조(예산 등의 지원)에서는 행정안전부훈령인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라 교섭단체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 경비의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고 재량행위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 제5조<sup>4)</sup>에서는

---

3) <사례> 경상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구성) ⑤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동시선거 후 제4항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제출하는 소속의원 명부 등은 의장선거일 전일까지 의회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안

제5조(구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회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의 의정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의정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서울시의회 등 일부 의회가 업무추진비(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는 바 교섭단체 및 대표의원에게만 “공개할 수 있다”의 재량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기본 조례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안 부칙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섭단체 및 대표의원에게 예산지원은 2024년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적용례 규정을 <예시><sup>5)</sup>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의장 귀하”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 귀하”로 띄어쓰기하는 것이 다른 조례<sup>6)</sup>와 통일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임.

## ○ 종합의견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교섭단체 및 대표의원의 기능과 역할이 모호한 측면이 있는 바 일부 의회<sup>7)</sup>와 같이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는 논의가 필요

---

5) <예시> 부칙

제2조(적용례) 제8조에 따른 예산지원 규정은 2024년도 예산편성분부터 적용한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별지서식 참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 귀하

7)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선임한다. 이 경우 각 대표의원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 최초 임시회의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에, 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 전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추천할 수 있다.

한 것은 아닌지 살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이고 입법체계, 부칙 등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끝.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205

제안일자: 2023. 8. 29.

제안자: 운영위원장

### 1. 수정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교섭단체 및 대표의원에 대한 예산지원 시기를 명확히 하고 별지 서식의 일부 미흡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2. 수정내용

가. 일부 미흡한 조문 수정(안 제7조)

나. 교섭단체 및 대표의원에 대한 예산지원 시기를 부칙에 규정함(안 부칙 제2조)

다. 별지 서식의 일부 미흡한 부분 개선 보완(안 별지 제1호서식~안 별지 제4호서식)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별지제3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안 부칙 제2조를 부칙 제3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에 따른 예산지원 규정은 2024년도 예산편성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 교섭단체 등록신청서

교섭단체명:

대표의원 인영부

성 명		직 인	사 인
한 글			
한 문			

※ 직인명 예시: 00당대표의원의인(1변 길이 2.4cm)

소속 의원 연서 명부

연 번	소속 정당	의원 성명	서 명

년 월 일

대표의원 ○ ○ ○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변경 보고

### □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 “구분” 란에는 교섭단체의 “명칭변경” 또는 “대표의원 변경” 등을 기재

### □ 대표의원 인영부

성 명		직 인	사 인
한 글			
한 문			

※ 직인명 예시: 00당대표의원의인(1변 길이 2.4cm)

### □ 소속 의원 연서 명부

연 번	소속 정당	의원 성명	서 명

※ 1개의 정당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서명” 란은 불요

년 월 일

대표의원 ○ ○ ○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 교섭단체 소속 의원 이동(정당변경)보고

### □ 이동보고

대 상 의 원		이 동 사 항			비 고
소속 정당	성 명	일 자	내 용	사 유	

※ 이동사항 중 “내용” 란에는 “교섭단체 탈퇴”, “신규가입” 등을 기재

### □ 정당변경 보고

의원성명	정 당 변 경 사 항			비 고
	당초 정당명	변경 정당명	변 경 일 자	

년 월 일

대표의원 ○ ○ ○ (인)

의원 ○ ○ ○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 당적 취득(소속정당 변경)보고

당적 취득보고

의원성명	당적 취득사항		비 고
	취득한 정당명	취 득 일 자	

소속정당 변경보고

의원성명	정 당 변 경 사 항			비 고
	당초 정당명	변경 정당명	변 경 일 자	

년 월 일

의원 ○ ○ ○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 귀하

##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7조(소속 의원의 이동 등 변경 사항 보고) ①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탈퇴 또는 신규 가입,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대표의원은 <u>별지제3호서식</u>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u>&lt;신 설&gt;</u></p> <p><u>제2조(경과조치)</u> 이 조례 시행 전에 각 당의 원내대표로 선출된 의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본다.</p>	<p>제7조(소속 의원의 이동 등 변경 사항 보고) ① ----- ----- ----- ----- <u>별지 제3호서식</u> ----- ----- ----- ----- ----- ----- ----- ----- -----.</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u>제2조(적용례) 제8조에 따른 예산 지원 규정은 2024년도 예산편성분부터 적용한다.</u></p> <p><u>제3조(경과조치)</u> ----- ----- ----- ----- -----.</p>

## 수정안 별지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별지 제1호서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b>교섭단체 등록신청서</b></p> <p><input type="checkbox"/> <u>교섭단체명 :</u></p> <p><input type="checkbox"/> <u>대표의원 인영부</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성</th> <th style="width: 10%;">명</th> <th style="width: 30%;">직 인</th> <th style="width: 50%;">사 인</th> </tr> </thead> <tbody> <tr> <td>한 글</td> <td></td> <td></td> <td></td> </tr> <tr> <td>한 문</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직인명 예시 : 00당대표의원의인(1변 길이 2.4cm)</p> <p><input type="checkbox"/> <u>소속 의원 연서 명부</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연 번</th> <th style="width: 20%;">소속 정당</th> <th style="width: 40%;">의원 성명</th> <th style="width: 30%;">서 명</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대표의원 ○ ○ ○ (인)</p> <p><u>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의장 귀하</u></p> </div>	성	명	직 인	사 인	한 글				한 문				연 번	소속 정당	의원 성명	서 명																	<p>[별지 제1호서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b>교섭단체 등록신청서</b></p> <p><input type="checkbox"/> <u>교섭단체명:</u></p> <p><input type="checkbox"/> <u>대표의원 인영부</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성</th> <th style="width: 10%;">명</th> <th style="width: 30%;">직 인</th> <th style="width: 50%;">사 인</th> </tr> </thead> <tbody> <tr> <td>한 글</td> <td></td> <td></td> <td></td> </tr> <tr> <td>한 문</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직인명 예시: 00당대표의원의인(1변 길이 2.4cm)</p> <p><input type="checkbox"/> <u>소속 의원 연서 명부</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연 번</th> <th style="width: 20%;">소속 정당</th> <th style="width: 40%;">의원 성명</th> <th style="width: 30%;">서 명</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대표의원 ○ ○ ○ (인)</p> <p><u>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 귀하</u></p> </div>	성	명	직 인	사 인	한 글				한 문				연 번	소속 정당	의원 성명	서 명																
성	명	직 인	사 인																																																														
한 글																																																																	
한 문																																																																	
연 번	소속 정당	의원 성명	서 명																																																														
성	명	직 인	사 인																																																														
한 글																																																																	
한 문																																																																	
연 번	소속 정당	의원 성명	서 명																																																														

[별지 제2호서식]

<b>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변경 보고</b>			
<input type="checkbox"/>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 “구분” 란에는 교섭단체의 “명칭변경” 또는 “대표의원 변경” 등을 기재			
<input type="checkbox"/> 대표의원 인영부			
성 명	직 인	사 인	
한 글			
한 문			
<input type="checkbox"/> 소속의원 연서 명부			
연 번	소속 정당	의원 성명	서 명
년 월 일 대표의원 ○ ○ ○ (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b>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변경 보고</b>			
<input type="checkbox"/>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 “구분” 란에는 교섭단체의 “명칭변경” 또는 “대표의원 변경” 등을 기재			
<input type="checkbox"/> 대표의원 인영부			
성 명	직 인	사 인	
한 글			
한 문			
※ 직인명 예시: 00당대표의원의인(1번 길이 2.4cm)			
<input type="checkbox"/> 소속의원 연서 명부			
연 번	소속 정당	의원 성명	서 명
년 월 일 대표의원 ○ ○ ○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 의원 이동(정당변경)보고					
<input type="checkbox"/> 이동보고					
대 상 의 원		이 동 사 항			비 고
소속정당	성 명	일 자	내 용	사 유	
※ 이동사항중 “내용” 란에는 “교섭단체 탈퇴”, “신규가입” 등을 기재					
<input type="checkbox"/> 정당변경 보고					
의원성명	정 당 변 경 사 항			비 고	
	당초 정당명	변경 정당명	변 경 일 자		
년      월      일 대표의원      ○ ○ ○      (인)					
<u>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의장 귀하</u>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 의원 이동(정당변경)보고					
<input type="checkbox"/> 이동보고					
대 상 의 원		이 동 사 항			비 고
소속정당	성 명	일 자	내 용	사 유	
※ 이동사항 중 “내용” 란에는 “교섭단체 탈퇴”, “신규가입” 등을 기재					
<input type="checkbox"/> 정당변경 보고					
의원성명	정 당 변 경 사 항			비 고	
	당초 정당명	변경 정당명	변 경 일 자		
년      월      일 대표의원      ○ ○ ○      (인)					
<u>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 귀하</u>					

[별지 제4호서식]

당적 취득(소속정당 변경)보고				
<input type="checkbox"/> 당적 취득보고				
의원성명	당적 취득사항			비고
	취득한 정당명	취 득 일 자		
<input type="checkbox"/> 소속정당 변경보고				
의원성명	정 당 변 경 사 항			비고
	당초 정당명	변경 정당명	변 경 일 자	
년      월      일 대표의원      ○ ○ ○      (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당적 취득(소속정당 변경)보고				
<input type="checkbox"/> 당적 취득보고				
의원성명	당적 취득사항			비고
	취득한 정당명	취 득 일 자		
<input type="checkbox"/> 소속정당 변경보고				
의원성명	정 당 변 경 사 항			비고
	당초 정당명	변경 정당명	변 경 일 자	
년      월      일 대표의원      ○ ○ ○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 귀하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과 부대표의원을 각각 1명씩 둘 수 있다.

제5조(대표의원의 직무 등)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를 대표하며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조정 및 종합한다.

② 의회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의장 및 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 과 협의할 수 있다.

③ 대표의원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표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①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섭단체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소속 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 ①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탈퇴 또는 신규 가입,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대표의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의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

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예산 등의 지원) ① 의장은 제3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및 대표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에 따른 예산지원 규정은 2024년도 예산편성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각 당의 원내대표로 선출된 의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 교섭단체 등록신청서

교섭단체명:

대표의원 인영부

성 명		직 인	사 인
한 글			
한 문			

※ 직인명 예시: 00당대표의원의인(1변 길이 2.4cm)

소속 의원 연서 명부

연 번	소속 정당	의원 성명	서 명

년 월 일

대표의원 ○ ○ ○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변경 보고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 “구분” 란에는 교섭단체의 “명칭변경” 또는 “대표의원 변경” 등을 기재

대표의원 인영부

성 명		직 인	사 인
한 글			
한 문			

※ 직인명 예시: 00당대표의원의인(1변 길이 2.4cm)

소속 의원 연서 명부

연 번	소속 정당	의원 성명	서 명

※ 1개의 정당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서명” 란은 불요

년 월 일

대표의원 ○ ○ ○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 교섭단체 소속 의원 이동(정당변경)보고

### □ 이동보고

대 상 의 원		이 동 사 항			비 고
소속 정당	성 명	일 자	내 용	사 유	

※ 이동사항 중 “내용” 란에는 “교섭단체 탈퇴”, “신규가입” 등을 기재

### □ 정당변경 보고

의원성명	정 당 변 경 사 항			비 고
	당초 정당명	변경 정당명	변 경 일 자	

년 월 일

대표의원 ○ ○ ○ (인)

의원 ○ ○ ○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 당적 취득(소속정당 변경)보고

당적 취득보고

의원성명	당적 취득사항		비 고
	취득한 정당명	취 득 일 자	

소속정당 변경보고

의원성명	정 당 변 경 사 항			비 고
	당초 정당명	변경 정당명	변 경 일 자	

년 월 일

의원 ○ ○ ○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 귀하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김진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
----------	-----

발의연월일: 2023. 8. 18.

발 의 자: 김진경·황영각·이성수·  
복진경·오온누리·이향숙·  
손민기·강을석·이동호·  
우종혁·노애자·이호귀·  
김광심·이도희 의원  
(이상14인)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나. 교섭단체의 정의 (안 제2조)
- 다. 교섭단체의 기능과 구성(안 제3조, 안 제4조)
- 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직무(안 제5조)
- 마. 교섭단체의 등록 및 소속 의원의 변경사항 보고 (안 제6조, 안 제7조)
- 바. 교섭단체 예산 등의 지원 (안 제8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과 부대표의원을 각각 1명씩 둘 수 있다.

제5조(대표의원의 직무 등)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를 대표하며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조정 및 종합한다.

② 의회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의장 및 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 과 협의할 수 있다.

③ 대표의원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표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①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섭단체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소속 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 ①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탈퇴 또는 신규 가입,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대표의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의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

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예산 등의 지원) ① 의장은 제3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및 대표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각 당의 원내대표로 선출된 의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 교섭단체 등록신청서

교섭단체명 :

대표의원 인영부

성명		직인	사인
한글			
한문			

※ 직인명 예시 : 00당대표의원의인(1변 길이 2.4cm)

소속 의원 연서 명부

연번	소속 정당	의원 성명	서명

년 월 일

대표의원 ○○○ (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변경 보고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 “구분” 란에는 교섭단체의 “명칭변경” 또는 “대표의원 변경” 등을 기재

대표의원 인영부

성 명		직 인	사 인
한 글			
한 문			

소속의원 연서 명부

연 번	소속 정당	의원 성명	서 명

※ 1개의 정당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서명” 란은 불요

년 월 일

대표의원 ○ ○ ○ (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 교섭단체 소속 의원 이동(정당변경)보고

### □ 이동보고

대 상 의 원		이 동 사 항			비 고
소속정당	성 명	일 자	내 용	사 유	

※ 이동사항중 “내용” 란에는 “교섭단체 탈퇴”, “신규가입” 등을 기재

### □ 정당변경 보고

의원성명	정 당 변 경 사 항			비 고
	당초 정당명	변경 정당명	변 경 일 자	

년 월 일

대표의원 ○ ○ ○ (인)

의원 ○ ○ ○ (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 당적 취득(소속정당 변경)보고

당적 취득보고

의원성명	당적 취득사항		비 고
	취득한 정당명	취 득 일 자	

소속정당 변경보고

의원성명	정 당 변 경 사 항			비 고
	당초 정당명	변경 정당명	변 경 일 자	

년 월 일

의원 ○ ○ ○ (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의장 귀하